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30

# 광 주 지 방 법 원

## 판 결

| | |
|---|---|
| 사 건 | 2017구단100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
| 피 고 | [redacted]구청장 |
| 변 론 종 결 | 2019. 6. 12. |
| 판 결 선 고 | 2019. 8. 21.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광주 광산구 B 외 6필지 및 C 지상 건물에 관한 취득세 55,579,540원, 지방교육세 5,537,150원, 농어촌특별세 2,76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30

가. 원고는 2014. 4. 29.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4. 5. 2. 광주 광산구 B 토지, 2014. 6. 30. D, E, F, G, C, H 토지 및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와 같이 면제받은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55,579,540원, 지방교육세 5,537,150원, 농어촌특별세 2,768,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을 설립하여 레미콘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30

동산을 취득하고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민원 발생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원고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의 취소판결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부동산에서 레미콘 제조공장을 신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28. 이 사건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였는데, 원고는 2014. 12. 10.에서야 피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되었음을 알리면서 재심의 관련 서류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201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30

12. 7.에서야 피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하였으나 결국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통보를 하였다.

> 1) 인허가 관련부서 협의 결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중 도시개발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분야에 대하여 불협의 통보됨
>
> 2) 사업신청부지는 집단취락지인 I마을주민, 전통누룩업체, 요양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어 레미콘제조업 공장가동 및 레미콘운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의 발생, 교통사고 위험 및 혼잡함 등이 예상되는 레미콘제조업공장은 기존 마을과 공존하기 부적합한 입지조건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라 개별공장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
>
> 3) 사업신청부지가 마을, 전통누룩업체, 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과 인접하여 레미콘운송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의 발생,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사업신청부지 인근 주민, 병원환자 및 전통누룩업체관계자 등 주민들 대다수가 공장설립에 반대하고 있는바, 본 공장설립시 달성되는 신청인의 사익보다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 및 환경피해와 교통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요청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창업사업계획 신청을 불승인함

4) 이 사건 부동산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경사도가 11도 내지 8도로 되어 있고, 위 부동산 경계에서 동쪽으로 30m 내지 80m 거리에 I마을(J마을, 67세대 193명), 54m 거리에 독립가옥이 있으며, 남쪽으로 바로 맞은편에 K(누룩공장), 150m 거리에 L요양병원(환자 360명, 직원 160명)이 있고, 북동쪽으로 50m 거리에 M(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60명, 직원 36명), 228m 거리에 N(환자 20명, 직원 20명), 372m 거리에 독립가옥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여 1일 8시간 기준 매월 25일(년 3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30

일) 가동하여 매월 레미콘 25,000㎥를 생산하고, 용수는 지하수로 202톤/일(생활용수 2톤, 공업용수 200톤)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6) 환경성검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계량시설, 혼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 먼지의 처리효율은 90%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먼지 117.8㎎/Sm³는 그대로 배출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회수된 먼지를 제거하고도 연간 0.65톤의 먼지(시멘트 분말)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건 공장에는 소음진동배출시설(압축기, 혼합기)이 설치될 예정인데, 소음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하는 소음의 처리효율은 39.5%에 불과하여 처리 후의 소음은 62.0dB(A)이다.

7) 소음·진동분야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레미콘차량 측정거리 6.75m(차속 62km/h)에서 86.7dB(A), 레미콘차량 측정거리 10.25m(차속 68km/h)에서 89.5dB(A)의 각 소음이 발생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교통영향분석에 의하면, 이 사건 레미콘 사업시행으로 인한 1일 화물차량 발생교통량은 332대/일로 예측되었다.

8) 한편, 원고는 2016. 4. 11.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886호로 피고의 2016. 1. 19.자 사업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5319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의 민원처리기간 내인 2014. 12. 19.까지 원고의 창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함에도 2016. 1. 19.에 이르러서야 사업계획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은 2014. 12. 20. 승인의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2016. 1. 19.자 사업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24.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30

법원 2018두67534호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9)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가 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의제처리 되지 않는 타 법률상 인·허가 사항(개발행위 허가) 및 이 사건 신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인·허가 사항(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30

188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경사도는 10도 이상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원고의 부동산 취득(2014. 6. 30.) 후 해당 사업에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2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심의자료 제출 요구 및 재심의 관련 서류 보완 요구에 응하기까지 1년 이상(2014. 8. 28.부터 2015. 12. 7.까지)이라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하려 한 것은 레미콘 제조공장으로 인근에 기존마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 제기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관계부서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간담회 개최 등의 여러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승인 절차의 성격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이나 취득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30

과정에서 피고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계획한 레미콘 생산량에 비추어 볼 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하더라도 레미콘공장의 먼지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레미콘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도 관계 법령상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앞에서 살펴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의 2016. 1. 19.자 사업계획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승인의제됨에 따라 초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 등 일부가 허가된 것으로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의제처리 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나 이 사건 신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 허가 등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과정이나 허가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결되지 못하였던 사정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30

별지

# 관 계 법 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 2항 또는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끝.